2023년 경기스타트업 공정M&A지원사업 투자 연계형 사업화지원 참가기업 모집공고

경기도 내 미래 유망 기술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지원으로 M&A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스타트업 공정M&A지원사업 투자 연계형 사업화지원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년 3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최종 선정

1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2023년 경기스타트업 공정M&A지원사업 투자 연계형 사업화지원

○ 지원대상 : 투자가 성사된 도내 7년 이내 기술창업분야 스타트업

○ **지원내용** : 시제품 제작비, 홍보/마케팅비, 지식재산권비 등 **사업화 자금 지원**

(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, 투자유치액 50% 이내)

○ 지워규모 : 6개사 내외

○ **사업기간** : 협약체결일 ~ 2023. 10. 31.

선정심사 1차

○ 추진일정(안)

	모잡증과접구		(서류심사)		결과 통보		(발표평가)		결과 통보
	3. 20.(월) ~ 4. 7.(금)	•	~4. 14.(금)	•	4. 17.(월) (예정)	•	4. 20.(목)	•	4. 27.(목) (예정)
į									
•	협약서류 제출		협약 체결		중간점검		사업추진		완료보고/평가, 사업비 정산

서류심사

선정심사 2차

※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이므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. 지원대상

○ 투자가 성사된 도내 7년 이내 **기술창업분야*** 스타트업

구 분	자 격 요 건
스타트업 회원	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내인 기업,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 체결완료 ※ '22년도 1.1. 이후 모집마감일까지 투자받은 스타트업 모집마감일 기준,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내인 기업 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'사업개시일(개업일)'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(회사성립연월일)' 기준 (단,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,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)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인 기업 ※ 협약 만료 후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사업장 및 대표직 유지가 가능한 기업(단, M&A로 인해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한다.)

* 스타트업 **기술창업** 세부 분야

스타트업 기술창업 분야

- 기계/재료, 전기/전자, 정보/통신, 화공/섬유 등 기술 창업분야
- 콘텐츠, 출판, 영상업 등 지식 창업분야
- 예/디자인, 식료품등 제조업, 아이디어 상품 등 아이디어 창업분야
- 앱/플랫폼 개발 등 IT 창업분야
- IoT/빅데이터/AI/첨단로봇/3D프린팅/친환경 에너지 등 4차산업 창업분야

3. 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투자유치액의 50%이내, 30백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

투자사 투자금*	총 사업비(부가세 제외)				
ナイバ ナバロ*	道 지원금	참여기업 부담금			
道 지원금의 50% 이상	총 사업비의 80% 이내 (투자사 투자금의 50% 이내, 최대 30백만원)	총 사업비의 20%(현금**+현물) 이상 부담			

- * 투자금은 '22. 1. 1.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계약체결 건만 인정
- ** 참여기업 부담금(현금)은 50% 이상
- 현물 산정 기준
- ①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시설·장비의 사용료 등
- ②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ㆍ시약ㆍ재료ㆍ개발시설ㆍ장비 등
- * 단, 상기 항목들이 타사에서 서비스 제공하지 않거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서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.(증빙필요)

- · 인력을 신규 채용한 참여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참여기업은 협약 시 신규 채용계획(또는 실적)을 제출하여야 한다. (향후 정산시 해당인력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, 학력 또는 경력증빙서류, 이력서(또는 포트폴리오), 급여대장, 근무상황부 제출 필요)
- **지원항목** : 시제품 제작비, 홍보/마케팅비, 지식재산권비 등 사업화 지원

분 야		지원내용					
아이템 개발		재료구입비, 시험 금형설계 등 ※ 외주용역비 : ※ 재료구입비 :	·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, 시제품 제작용 성분석 및 각종 인증획득비,제품 기구설계, PCB 설계, 참여기업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,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(견품, 시약, 재료 구입비 등) 필요한 최소수량 구입분만 인정하며 최소수량분이라는 처에서 받아 증빙)				
			∘ 외주용역(개발)비, 소프트웨어 임차비만 인정 -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구입 인정				
		지식서비스 분야	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비(개발 인건비) 인건비는 협약기간내 신규 채용자에 한함 (총비용 80% 이내, 고용인원 1인 월 최대200만원) 				
			• 협약기간 중 기자재 임차료만 인정				
	멀티 미디어						
마케팅 지원	디자인	 전자·종이 카달로그, 포스터·포장 디자인, 브랜드 개발, 제품 디자인 ※ (제외) 제품·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, 장비 구입비 					
	광고 홍보	홍보, 크라우드핀	7, 신문·전문지 홍보, 지하철·버스·옥외 광고, 온라인 선딩(온오프 입점 등), 국내외전시 참가비용 등 배스트, 소비자 반응 조사 등				
지식 재산권		· 지식재산권 출원비(등록비) 지원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					
세무회계 등		 회계감사비(회계감사보고서), 시장조사비용 등 해외전시회 참가지원, 해외세미나, 포럼, 기타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					

- 3 -

4. 지원제외 대상

- ○휴업 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
- ○경기도 및 타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
- *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(사업화지원사업)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 (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, 시설·공간·보육 지원, 멘토링·컨설팅 지원, 행사·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), 중단(중단처분, 중도포기자) 포함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,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구분	제외 대상 업종]
1	일반유흥주점업	1
2	무도유흥주점업	1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1
4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1

- ㅇ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
- ○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(단, 시효 소멸자는 제외)
- ㅇ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증인 자
- ㅇ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
- ·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·사업
- ·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- ·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·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·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- ·보조금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

5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'23. 3. 20.(월) ~ 4. 7.(금) 17:00 까지
- 신청방법 : 경기스타트업플랫폼(www.gsp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플랫폼 내 「지원사업」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
- 「마이스페이스홈」 「활동이력」메뉴의「지원사업」란에서 최종 신청확인 必
- 접수마감 1~2일 전 서류 업로드 등 신청완료 요망 (접수마감 전, 제출서류 수정 가능)

○ 제출서류

구 분	제 출 내 용	필수제출	서식
참여신청서			제1호
사업계획서		©	제2호
지원금 사용계획서			제3호
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	고그ㅁ 내 별이 기사에 되서 나이 중 가게 (기버이네그		제4호
창업동의서	· 공고문 내 붙임 서식에 작성, 날인 후 스캔 (기본인쇄로 출력(1면 1페이지), 모아찍기 금지)		제5호
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동의서	·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가입일은 [My Space]-[나의		제6호
기업의 법위반 시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	정보] 메뉴에서 확인 가능		제7호
기업의 법위반 사실(<u>부존</u> 재) 여부 확약서			제8호
이의 및 구체 신청서		해당시	제9호
투자계약서, 주주명부			
투자금 송금확인증	· 투자계약서는 계약체결일, 계약/이해관계자 간 날인, 주식의 발행/인수, 지분변동사항 포함 必	0	-
사업자등록증(투자자)	7 7 7 2 3 2 7 7 2 2 3 7 3 2 3		
사업자등록증명(스타트업)	·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(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)	0	-
법인등기부등본(스타트업)	· 법인사업자의 경우 제출 必	해당시	-
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· 모집마감일 기준, 유효기간 내 발급분(국세청 홈택스, 정부24 발급)	0	-
성과 증빙	· 전년도 매출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, 고용(4대보험가입자명부 등), 지식재산권 사본 등 ·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(또는 계약서, 선정확인서), 완료보고서 사본	해당시	-

※ 제출서류는 **한글(HWP) 또는 PDF 형식**으로 제출 (알집파일 가능)

6. 평가 및 선정절차

1차 사전심사 (서류검토)			2차 본심사 (발표평가)		최종 선정		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
제출서류 검토, 자격 적격여부, 중복수혜 여부 및 투자사실 검증	•	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아이템, 기술성, 성장 가능성 등 평가	•	법위반 사실여부 등 적격여부 최종 확인, 평가결과 합산 및 참여기업 선정	•	협약안내/체결, 사업화 자금 지원	

○ 1차 사전심사(서류검토)

- 투자자 및 스타트업 플랫폼 회원가입 여부, 투자사실,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적격여부 심사

○ 2차 본 심사(발표평가)

- 평가방법 :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,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※ 경기도 고시 제2023-6호 [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] 의거,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- ㅇ 법위반 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 - 1) (공정)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 - 2) (노동) 4 근로기준법, 5 산업안전보건법
 - 3) (환경) 6 폐기물관리법, 7 대기환경보전법, 8 소음진동관리법, 9 물환경보전법
 - 4) (납세) 🐠 국세기본법, 🕕 지방세기본법
- 평가내용 : 투자사실 재검증,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적정성, 사업아이템 기술성, 사업아이템의 성장가능성 등 평가

7. 기타

○ 사업 참여 유의사항

-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,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* 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,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, 선정/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, 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협약기간 내 동일(유사) 아이템으로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, 지원금 환수 및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체결 시 道지원금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- 경기도 고시 제2023-6호 [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] 의거, **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** 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) **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**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문의처

- 공고/사업 관련 문의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허브팀

T. 031-8039-7102 / E. elecmin@gbsa.or.kr

-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이용(시스템 접수, 오류 등) 문의 : T. 070-4070-4191